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2026년 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 지침

2026. 3.

서 울 특 별 시

(미래청년기획관)

붙임1

2026년 서울청년센터 종사자 급여체계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준용 ('23. 1. 1.이후 새롭게 근로계약 체결 시)

□ 기본급

(단위: 원)

직급 /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관리직	기능직
1호봉		3,169,000	2,703,000	2,550,000	2,518,000	2,492,000	2,466,000
2호봉		3,239,000	2,784,000	2,577,000	2,545,000	2,519,000	2,493,000
3호봉		3,312,000	2,872,000	2,604,000	2,572,000	2,546,000	2,520,000
4호봉		3,390,000	2,969,000	2,631,000	2,597,000	2,571,000	2,545,000
5호봉		3,470,000	3,068,000	2,712,000	2,618,000	2,593,000	2,567,000
6호봉		3,563,000	3,167,000	2,812,000	2,638,000	2,616,000	2,591,000
7호봉		3,663,000	3,266,000	2,912,000	2,659,000	2,643,000	2,618,000
8호봉		3,763,000	3,365,000	3,004,000	2,743,000	2,664,000	2,640,000
9호봉		3,863,000	3,475,000	3,102,000	2,842,000	2,761,000	2,661,000
10호봉		3,963,000	3,575,000	3,202,000	2,929,000	2,844,000	2,705,000
11호봉		4,063,000	3,675,000	3,298,000	3,008,000	2,941,000	2,780,000
12호봉		4,163,000	3,730,000	3,359,000	3,069,000	2,996,000	2,847,000
13호봉		4,263,000	3,785,000	3,426,000	3,148,000	3,053,000	2,893,000
14호봉		4,363,000	3,850,000	3,494,000	3,228,000	3,104,000	2,959,000
15호봉		4,444,000	3,915,000	3,566,000	3,281,000	3,162,000	3,010,000
16호봉	4,912,000	4,524,000	4,006,000	3,637,000	3,354,000	3,218,000	3,081,000
17호봉	4,969,000	4,602,000	4,073,000	3,708,000	3,401,000	3,265,000	3,157,000
18호봉	5,022,000	4,672,000	4,147,000	3,776,000	3,472,000	3,330,000	3,218,000
19호봉	5,096,000	4,738,000	4,212,000	3,841,000	3,530,000	3,388,000	3,272,000
20호봉	5,173,000	4,802,000	4,278,000	3,902,000	3,590,000	3,448,000	3,336,000
21호봉	5,271,000	4,862,000	4,339,000	3,966,000	3,644,000	3,527,000	3,410,000
22호봉	5,336,000	4,923,000	4,399,000	4,020,000	3,699,000	3,585,000	3,471,000
23호봉	5,395,000	4,985,000	4,454,000	4,073,000	3,748,000	3,639,000	3,530,000
24호봉	5,451,000	5,046,000	4,513,000	4,122,000	3,796,000	3,701,000	3,574,000
25호봉	5,506,000	5,107,000	4,568,000	4,176,000	3,843,000	3,740,000	3,629,000
26호봉	5,577,000	5,170,000	4,620,000	4,223,000	3,889,000	3,789,000	3,679,000
27호봉	5,622,000	5,233,000	4,681,000	4,270,000	3,935,000	3,839,000	3,729,000
28호봉	5,661,000	5,296,000	4,744,000	4,317,000	3,979,000	3,898,000	3,789,000
29호봉	5,729,000	5,360,000	4,807,000	4,364,000	4,023,000	3,960,000	3,849,000
30호봉	5,788,000	5,424,000	4,867,000	4,411,000	4,063,000	4,018,000	3,909,000
31호봉		5,484,000	4,917,000	4,461,000	4,113,000	4,078,000	3,969,000

※ 정기승급 및 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연수 산정은 경력환산기준표 참고

□ 수당

구 분	수당명	지급기준	지급액
단일임금 지급수당	가 족 수 당	▸ 자녀 인원제한 없음 ▸ 자녀 제외 지급인원 4명 이내 ▸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배우자 : 40천원 ▸ 자 녀 : 첫째(50천원), 둘째(80천원), 셋째부터 120천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기타 : 20천원
	명 절 휴 가 비	기본급의 120%(年)	설,추석 각 기본급의 60% (연 2회 지급)
	정 액 급 식 비	정액(매월)	140천원
	관 리 자 수 당	정액(매월)	**220천원** *센터장만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기관장 제외)	① (8시간 미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1/209*1.5 ② (8시간 이상) 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1/209*2 (최대 월 15시간, 예산범위내)	
그 외	연 차 수 당	▸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운영 권고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월봉급액 × 1/30 × 연차잔여일수)	
	자 격 수 당	▸ 국가공인 업무관련 자격증 1급(월40천원), 2,3급(월30천원)	
	성 과 상 여 금	▸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직급별 평균호봉의 0~100% 지급가능 ※ 성과상여금은 사업추진성과평가에 따라 책정 가능(당해연도 사업평가 후 차년도 반영)	

붙임 2	**서울청년센터 종사자 경력인정(호봉산정) 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준용 ('23. 1. 1.이후 새롭게 근로계약 체결 시)

○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인정 비율	인정대상경력
100%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청년정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청년시설(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2.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주체 또는 위·수탁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경력 100% 인정** *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 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②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16.1.1.부터 적용, **100%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조건부신고시설 :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02~'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위탁기관에 채용되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 '18.1.1.부터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부터 적용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등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8. **「청소년보호법」 제35조**에 의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객관적 증빙자료 검토 필수 :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업무분장표 등**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4.1.부터 적용 9.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객관적 증빙자료 검토 필수 :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업무분장표 등**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4.1.부터 적용 10.**「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객관적 증빙자료 검토 필수 :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업무분장표 등**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4.1.부터 적용 11. **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청년정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청년사업 관련 근무 경력** ※ 단,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등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계산 **※ 객관적 증빙자료 검토 필수 : 업무분장표, 청년사업 수행경력 증빙 자료 등**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4.1.부터 적용
80%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를 근거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가 규정됨 *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 (적용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장소와 관계 없이(학교, 병원, 회사 등) 유사경력 인정 가능: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 요망 □ **보건복지부 유사경력 Q&A (종전근무 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6.1.1부터)** ①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학교복지사에서 근무, ②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③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우 ▶ 모두 해당 자격증 규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유사경력 인정 가능 **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보건복지부 동종 경력인정 Q&A (종전근무 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6.1.1부터)** 음식점에서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조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이후 사회복지시설 조리원으로 근무한다면 유사경력 인정 가능 * (동종직종)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2.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

(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또는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3-1.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 단,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등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계산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4.1.부터 적용

3-2. 비공무원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 청년사업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단, **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산정

※ **객관적 증빙자료 검토 필수 :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업무분장표 등**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4.1.부터 적용

4.「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5.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6.「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7.「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8.「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0.「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1.「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2.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1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원(상근간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

※ 종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도 동일하게 인정

14.「민법」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5.「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6.「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수행기관에 근로지원인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활동지원사 경력의 종전 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5.1.1부터 적용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19.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직원 또는 노인일자리 담당자로**(구 전담인력)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13.12.5)되기 전의 근무경력)
* 종전근무 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으로 일한 경우, 18.1.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직원 또는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일한 경우 25.1.1부터 적용

20.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라 설치된 **피해장애인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22.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3. **「북한이탈주민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한 경력

2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상 **사업수행기관(지역센터)에서 거점응급안전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채용되었던 자로, **수행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직무가 '거점응급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명시**된 근무경력

25.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연도	사업명	직종
2007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2008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09~2011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2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독거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돌보미
2013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4~2019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26.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2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상 제공기관에서 **관리책임자, 전담 관리인력, 제공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9.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전담인력 또는 지원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0.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3 등에** 따른 보훈복지서비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

3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지역장애인체육회**(시·도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로 채용되어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33. **「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4. **「아동복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5.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7.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㊳은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3.1.1.부터 적용

39.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㊴은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3.1.1.부터 적용

※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또는 사업계획서, 시설 신고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지 확인 필요

40.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㊵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단,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근무경력은 근무 구간별 범위까지 경력인정('24년 6월말, 7월말, 10월말일까지 3구간)

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기획재정부 지정고시)**에서 근무한 경력**

※ 객관적 증빙자료 검토 필수 :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업무분장표 등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4.1.부터 적용

	42.「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행정안전부 지정고시)**에서 근무한 경력** **※ 객관적 증빙자료 검토 필수 :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업무분장표 등**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4.1.부터 적용 **43. 국가공인 상담자격증을 소지하고 민간·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한 경력** **※ 객관적 증빙자료 검토 필수 : 국가공인 상담자격증 제출(원본대조필 날인),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업무분장표 등** **※ 경력증명서 등에 상담업무 수행기간 명시** **※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상담업무 경력' 중복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력 1개만 호봉 산정**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4.1.부터 적용 **44. 복지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실·평생교육국**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청소년·청년 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에서 근무한 경력 **※ 객관적 증빙자료 검토 필수 :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업무분장표 등**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4.1.부터 적용 **45.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립·구립 시설(직영 또는 위탁) 근무 경력** **※ 객관적 증빙자료 검토 필수 :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업무분장표 등**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4.1.부터 적용
유의사항	1. 경력인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 2. 상기 기준은 보건복지부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하며(항목별 경력합산 시점 등 참고) 3.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준용** 4.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1.부터 적용" 의 의미** - '△△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해당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된다는 의미로, 과거의 급여를 소급하지 않음 5. **청년사업 관련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경력 환산 방법(경력인정비율 : 100%)** -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경우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 $$\text{시간제 근무기간} \times \frac{\text{시간제 근무를 하는 종사자의 주당 근무시간}}{\text{40시간(정상근무시간)}}$$

6.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및 단시간근로자 경력 환산 방법(경력인정비율 : 80%)**

-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경우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

<예시> '21년 7월 1일부터 '23년 10월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청년사업 부서**에서 **주 35시간 계약**으로 근무한 **단시간근로자**의 경력

△ **주 40시간 미만 근로 단시간근로자**는 **정상 근무시간(40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

$$\text{시간제근무기간} \times \frac{\text{시간제근무를 하는 종사자의 주당 근무시간}}{\text{40시간(정상근무시간)}} \times 80\%$$

△ 환산율이 80%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소수점 이하 절사)

△ **경력인정 : 1년 7월 12일**

→ ['21.7.1 ~ '23.6.30.] 2년 × (35시간 / 40시간) x 0.8 = 1.4년(12월×0.4) = 1년 4.8월(30일×0.8) = 1년 4월 24일

→ ['23.7.1 ~ '23.9.30.] 3월 × (35시간 / 40시간) x 0.8 = 2.1월 = 2월 3일

→ ['23.10.1 ~ '23.10.22.] 22일 × (35시간 / 40시간) x 0.8 = 15.4일 = 15일

붙임3 서울청년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채용기준)

구 분	(개정) 자 격 기 준
광역센터 센터장	①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 청년, 청소년, 상담, 교육학, 행정학, 정책학, 공학, 경영학 등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민간·공공기관에서 일자리지원, 금융지원, 주거지원, 복지, 청년 또는 청소년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객관적 증빙자료 검토 필수 : 학위증명서,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업무분장표 등 ②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 청년, 청소년, 상담, 교육학, 행정학, 정책학, 공학, 경영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한 자 ※ 객관적 증빙자료 검토 필수 : 학위증명서, 연구실적 등 ③ 사회복지, 청년, 청소년, 상담, 교육학, 행정학, 정책학, 공학, 경영학 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로서 민간·공공기관에서 일자리지원, 금융지원, 주거지원, 복지, 청년 또는 청소년 관련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객관적 증빙자료 검토 필수 : 국가공인자격증 제출(원본대조필 날인), 학위증명서,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업무분장표 등 ④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단, 인사위원회 구성 시 서울시 추천위원 1명 이상 위촉
청년센터 센터장 · 광역센터 부장	①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 청년, 청소년, 상담, 교육학, 행정학, 정책학, 공학, 경영학 등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민간·공공기관에서 일자리지원, 금융지원, 주거지원, 복지, 청년 또는 청소년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객관적 증빙자료 검토 필수 : 학위증명서,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업무분장표 등 ②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 청년, 청소년, 상담, 교육학, 행정학, 정책학, 공학, 경영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한 자 ※ 객관적 증빙자료 검토 필수 : 학위증명서, 연구실적 등 ③ 사회복지, 청년, 청소년, 상담, 교육학, 행정학, 정책학, 공학, 경영학 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로서 민간·공공기관에서 일자리지원, 금융지원, 주거지원, 복지, 청년 또는 청소년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객관적 증빙자료 검토 필수 : 국가공인자격증 제출(원본대조필 날인), 학위증명서,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업무분장표 등 ④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단, 인사위원회 구성 시 서울시 추천위원 1명 이상 위촉

광역센터 팀장 · 지역센터 선임 매니저	①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사회복지, 청년, 청소년, 상담, 교육학, 행정학, 정책학, 공학, 경영학 등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민간·공공기관에서 일자리지원, 금융지원, 주거지원, 복지, 청년 또는 청소년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객관적 증빙자료 검토 필수 : 학위증명서,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업무분장표 등 ②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사회복지, 청년, 청소년, 상담, 교육학, 행정학, 정책학, 공학, 경영학 등 전문학사학위를 학위를 취득한 후, 민간·공공기관에서 일자리지원, 금융지원, 주거지원, 복지, 청년 또는 청소년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객관적 증빙자료 검토 필수 : 학위증명서,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업무분장표 등 ③ 사회복지, 청년, 청소년, 상담, 교육학, 행정학, 정책학, 공학, 경영학 등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민간·공공기관에서 일자리지원, 금융지원, 주거지원, 복지, 청년 또는 청소년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객관적 증빙자료 검토 필수 : 학위증명서,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업무분장표 등 ④ 사회복지, 청년, 청소년, 상담, 교육학, 행정학, 정책학, 공학, 경영학 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로서 민간·공공기관에서 일자리지원, 금융지원, 주거지원, 복지, 청년 또는 청소년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객관적 증빙자료 검토 필수 : 국가공인자격증 제출(원본대조필 날인), 학위증명서,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업무분장표 등 ⑤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단, 인사위원회 구성 시 서울시 추천위원 1명 이상 위촉
광역센터 주임 · 지역센터 매니저	①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 청년, 청소년, 상담, 교육학, 행정학, 정책학, 공학, 경영학 등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민간·공공기관에서 일자리지원, 금융지원, 주거지원, 복지, 청년 또는 청소년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객관적 증빙자료 검토 필수 : 학위증명서,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업무분장표 등 ②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사회복지, 청년, 청소년, 상담, 교육학, 행정학, 정책학, 공학, 경영학 등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민간·공공기관에서 일자리지원, 금융지원, 주거지원, 복지, 청년 또는 청소년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객관적 증빙자료 검토 필수 : 학위증명서,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업무분장표 등 ③ 사회복지, 청년, 청소년, 상담, 교육학, 행정학, 정책학, 공학, 경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객관적 증빙자료 검토 필수 : 학위증명서,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업무분장표 등 ④ 사회복지, 청년, 청소년, 상담, 교육학, 행정학, 정책학, 공학, 경영학 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 객관적 증빙자료 검토 필수 : 국가자격증 제출(원본대조필 날인) ⑤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단, 인사위원회 구성 시 서울시 추천위원 1명 이상 위촉

붙임5 서울청년센터 결격기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